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173-01

WTO 농업보조금

2009. 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Ⅰ.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 1
1.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 3
2. 농업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 5

Ⅱ. 국내보조 ····· 11
1.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13
1) 감축대상 보조의 유형 ····· 13
2) 감축대상 보조 산정 방법 ····· 14
3) 감축대상 보조 감축 약속 ····· 16
4) AMS 감축 방법 ····· 16
2. 허용보조(Green Box) ····· 17
1) 허용보조의 유형 ····· 17
2) 허용보조의 요건 ····· 17
3) 허용보조의 정책 특정적 요건 ····· 18
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 26
4. 국내보조 지급현황 ····· 28

Ⅲ. 수출보조 ····· 29
1. 수출보조의 정의 ····· 31
2. 수출보조의 유형 ····· 31
3.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 32
4. 수출보조 지급현황 ····· 32

Ⅳ. 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절차 ····· 33

Ⅴ. Q&A ····· 39

<참고> 1. WTO 농업협정문 ····· 53
2.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논의 동향 ····· 135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I

1.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2. 농업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1.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1) 보조금의 정의(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보조금 정의)

❑ 보조금은 "**상품(또는 상품의 생산자)에 혜택을 부여(benefit conferred)하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소득·가격 지지**"임

○ 구체적으로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에 해당하려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지원이 행해져야 함

① 무상지원(grant), 대출(loan), 자본참여(equity infusion) 등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

② 대출보증(loan guarantee)과 같이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

③ 세액공제(tax credits)를 포함한 재정적 유인책과 같은 정부수입(government revenue)의 포기,

④ 일반적인 사회간접시설 제공이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것,

⑤ 자금공여기관(funding mechanism)에 대한 정부의 지불,

⑥ 상기 기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행위를 제공하도록 민간기관에게 정부가 위임하거나 지시하는(entrust or direct) 경우이며, 그 행위가 보통 정부가 행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

○ 한편, "**소득·가격지지(income or price support)**"의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를 위해 가격이나 소득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재정적 기여나 소득·가격 지지의 결과 "혜택이 수여(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되어야 보조금에 해당함. 이러한 혜택발생 조건은 정상적인 상업적 거래와 보조금을 구별함으로써 보조금 정의의 범위를 좁히는 효과가 있음. 결국 보조금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① 정부융자의 경우는 정부융자를 받으면서 생산자가 지불하는 대가(대부이자율)가 일반 시중 융자시 지불하는 대가(시중이자율)보다 저렴한 경우, 그 차이만큼이 보조금에 해당

② 정부의 자본참여의 경우는 정부가 통상 투자관행에 합치하지 않는 양태로 투자한 정도가 보조금에 해당한다. 즉, 과도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보조금에 해당

③ 정부 대출보증의 경우는 정부 대출보증료율이 민간 대출보증료율 보다 저렴한 경우 그 차이가 보조금에 해당

④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시중에서 통상 지불되는 대가 보다 적은 정도가 보조금이 된다. 그리고 정부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대금이 시중가격을 초과한 정도가 보조금에 해당

2) 보조금의 분류

❑ WTO는 **정부의 지원을 3가지 협정**을 통하여 규율

- **농업부문** : **농업협정**으로 규율하고 **농업보조금**이 이에 해당
- **비농업부문**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규율하고 금지대상, 상계조치대상 및 허용대상 보조금으로 분류
- **서비스부문**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규율

❍ 첫째, **"농업협정"**에서는 보조금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분류**되며,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이 여타 협정 규정보다 우선 적용

❍ 둘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WTO하의 협정으로서 상품교역에 대해 적용하는 협정으로 세 가지 보조금(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

① 수출성과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금지 보조금)**

②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성을 띠고

지원되는 보조금(**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③ ②항에 제시된 보조금이 존재하나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은 있으나 협정 제8조2항에 제시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 지원 등은 허용(**허용보조금**)

○ 셋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구체적인 보조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음

2. 농업보조금 정의 및 분류

1) 농업보조금의 정의

❑ WTO 농업협정은 **개별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입**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국내정책**을 농업 보조정책으로 보고, 동 정책에 소요된 비용을 농업보조금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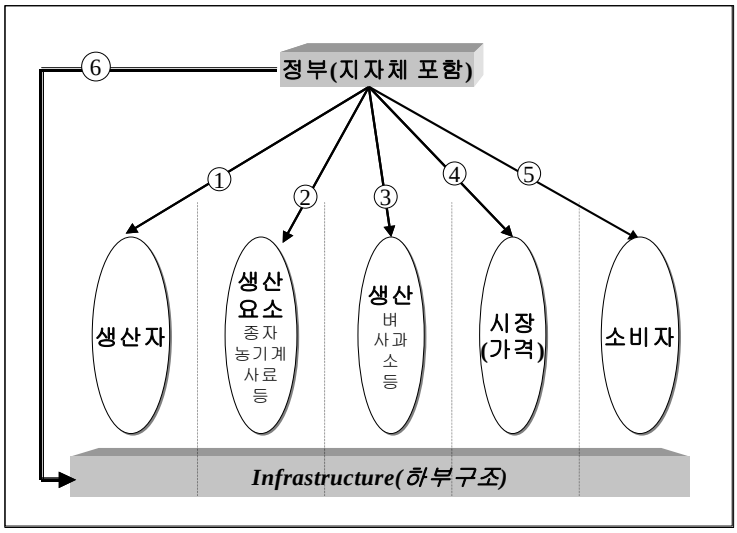

①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② 생산요소가격 하락을 통한 한계비용 감소
③ 생산 촉진, 통제 또는 전작 등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
④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물량을 조절하는 경우

⑤ 수요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조
⑥ 농민, 농업, 농산물 소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2) 농업보조금의 분류

* 농업협정은 보조금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보조(Export Subsidy)**로 분류

가. 국내보조

○ **국내보조**는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것이거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조치로서 정부·정부대행기관·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Revenue forgone)를 포함

○ 국내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에 따라 **감축대상보조(Amber Box),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3가지로** 분류

* 세 개의 박스는 교통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표현되고 있으며, **Amber Box**는 **주홍색**(속도줄임)으로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Green Box**는 **녹색**(통과)으로 요건 충족시 **한도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고, **Blue Box**(조건부 통과)는 **파란색**으로 감축대상 보조이지만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감축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

☺ 농업보조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금지보조금은 없음

① **감축대상보조**(농업협정문 제6조제1항)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로써 보조총액측정치(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로 계량화 됨

*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이 증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에서 수입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② **허용보조**(농업협정문 부속서2)는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야 하며, 농업협정의 정책특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을 말함

– 허용보조는 무역왜곡 효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하는 **기본요건과 해당 정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정부서비스,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을 예로 들 수 있음

③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농업협정문 제6조제5항)은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감축의무를 면제해 주는 보조를 말함

※ 현재 논의 중인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합하여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며, 개별 보조금뿐만 아니라 무역왜곡보조총액도 감축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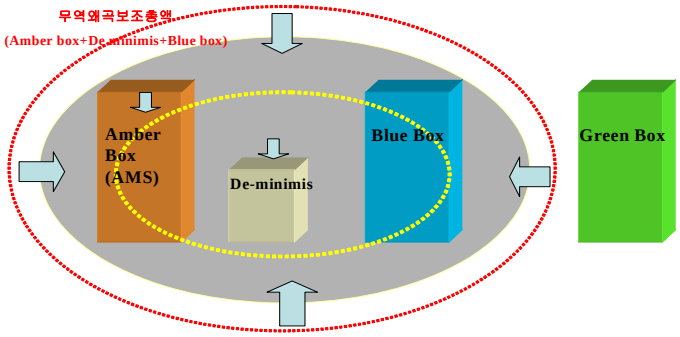

나. 수출보조

수출보조(농업협정문 제1조(e), 자세한 내용은 제9조)는 수출실적에 따라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

▶ 농업협정 제1조(e)

- "수출보조금은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 "export subsidies" refers to subsidie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 제9조에 언급된 수출보조의 종류(6가지)

① 정부에 의한 수출관련 직접보조
② 공공재고 수출을 위한 저가판매 또는 처분
③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하의 재정에 의한 보조
④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⑤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 운송비 지원
⑥ 수출상품에 포함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 개도국의 경우 ④, ⑤는 감축의무 면제(농업협정 제9조 4항)

※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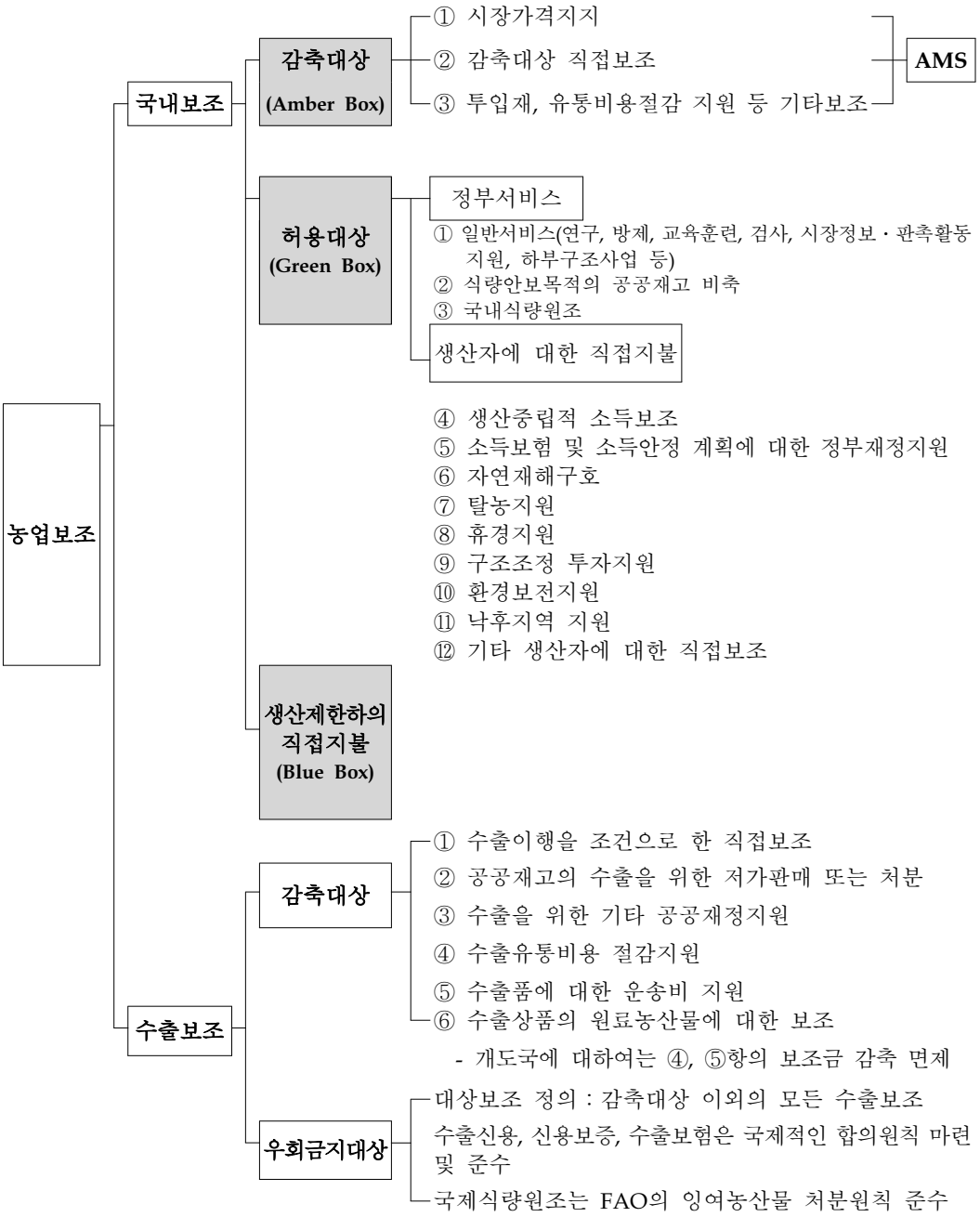

※ 농업보조금 분류 가이드

1. 국내보조인가, 수출보조인가

- 정부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농업과 농촌 개발을 위한 것이거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일 경우는 **국내보조**
- 농산물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또는 농산물 수출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수출보조**

2. 허용보조인가, 감축대상보조인가

- 지원목적과 방법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는 **허용보조**
- 지원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허용보조의 요건과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는 **감축대상보조**

3. 감축대상보조 분류

- 당해 품목의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시장가격지지 보조**
- 목표가격이나 생산량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생산량이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감축대상 직접보조**
-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생산,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허용보조 이외의 지원인 경우는 **감축대상 기타보조**
- 개도국 우대보조, 최소허용 보조, 생산제한계획 하의 직접보조는 감축의무 면제 대상 보조

4. 허용보조 중에서 정부서비스 지원인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인가

- 일반적인 농업개발, 농촌지원 또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정부서비스 지원**
- 당해 지원사업이 농민에 대하여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징수감면 또는 특혜부여 등 이익을 주는 정책일 경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국 내 보 조

Ⅱ

1. 감축대상보조(Amber Box)
2. 허용보조(Green Box)
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4. 국내보조 지급현황

Ⅱ 국내보조

1. 감축대상보조(Amber Box)

1) 감축대상 보조의 유형

유 형	사 업 예 시
○ 시장가격지지	보리, 콩, 옥수수 등의 정부수매
○ 비면제 직접지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소득보전직불제
○ 투입재 보조 및 기타	비료판매가격, 공동규격 출하지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지원 등

①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지지에는 정부수매, 최저가격제도** 등이 있는데 어떠한 정책이 시장가격지지인가는 당해 국가의 제도 운영방법과 그 효과에 의해 판단됨
- 정부가 개입하여 국내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i)관세부과 등 국경보호조치를 통하여 저가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 **ii)정부재정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보조에 포함되는 것은 후자에 한정

② 비 면제 직접지불 (Non-exempt direct payments)

-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시켜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서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

③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 보조

-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을 제외한 감축대상보조로서 **농업생산, 가공,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
- 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기자재, 종자, 농업용수 등에 대한 **투입재 보조**와 영농자금지원, 운송비 등 **유통비용보조** 등이 포함

2) 감축대상 보조 산정 방법

① 보조총액측정치(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개념

- AMS는 감축대상 보조를 **단일의 수치로 계량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보조금 감축기준 설정, 이행평가, 감축의무 면제수준 결정 등에 활용
- AMS는 품목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품목특정 AMS**와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품목불특정 AMS**로 분류
  * 예를 들어, 쌀을 수매하기 위한 비용은 단지 쌀 이라는 품목에 그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어 품목특정 AMS이지만, 비료 구입 보조는 여러 밭작물 혹은 논농사에 이용되어 품목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품목불특정 AMS로 분류
- 다만, 품목특정 AMS중에서 당해 개별 농산물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미만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로 분류되고, 품목불특정 AMS의 총 합계가 해당 연도 농업 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미만) 미만인 경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어AMS에 산입되지 않음

▶ 최소허용보조(농업협정 제6조 제4항)
- 품목특정적보조의 경우 당해 품목총생산액의 5%(개도국10%)이하
- 품목불특정적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10%)이하

→ 현행 총 AMS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축의무가 없음

② AMS 계산방법

- AMS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기타 감축대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각의 농산물에 대해 품목특정 AMS가 산출되고 품목불특정인 보조는 어느 품목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구분을 할 수 없으므로 품목불특정적 AMS로 산출(농업협정문 부속서3 제1항)되며, 아래의 보조를 모두 포함
  ⅰ) 재정지출 뿐 아니라 징수감면액까지 포함
  ⅱ)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의 보조를 모두 포함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모두 포함
  ⅳ)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 농업부과금이나 수수료는 차감

※ 유형별 AMS 계산방법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 **시장가격지지 보조=(적용관리가격 – 고정외부참조가격)×적용대상물량**

•**적용관리가격** : 정부의 수매가격

•**고정외부참조가격** (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 국제가격으로 '86-'88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FOB : Free on board)이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고정외부참조가격은 이행계획서의 국내보조 산출근거에 기재되어 그 값이 고정되어 있음

•**적용대상물량** : 시장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정책 대상 물량

<비면제 직접지불(Non-exempt Direct Payment)>

▶ **비면제직접지불 = [(적용관리가격 – 고정참조가격) × 적용대상물량] 또는 재정지출액**

•적용관리가격 : 국내가격

•고정참조가격 : 국제가격으로 '86-'88년을 기초로 한 실제가격

* 우리나라는 이행계획서 작성시 국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재정지출액으로 동 지급액을 평가

• 가격 이외의 요소에 기초한 비면제 직접지불은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액을 사용

<기타 감축대상보조>

ⅰ) 재정지출액을 사용하거나 또는,

ⅱ) 재정지출액의 사용이 관련보조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유사품목 또는 서비스의 대표적 시장가격) – (보조를 받은 품목 또는 서비스의 가격)×동 품목 또는 서비스의 양

•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시장금리 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경우이며 (시장금리−정책금리)×융자금액으로 산정

3) 감축대상 보조 감축 약속

❍ 감축대상보조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Total AMS를 계산하고 회원국의 양허표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이를 감축해 나가야 함.

▶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란?**

− 각 회원국이 UR협상 결과에 따라 작성한 각국의 관세 및 보조금 등의 감축 계획표라고 할 수 있음

− 국내보조 관련내용은 양허표 제4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각국의 기준년도AMS에서 매년 동일비율씩 감축하되, 선진국은 6년 동안 20%, 개도국은 10년 동안 13.3%를 감축하기로 함

4) AMS 감축 방법

❍ 감축보조는 연도별로 사전에 정해진 총(Total) AMS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고 매년 감축해나가야 하며,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의무**

* 총 AMS한도 및 연도별 사용가능한 AMS 한도는 각국의 이행계획서에 명시

❍ 각 이행년도의 품목특정적, 품목불특정적 AMS를 농업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산한 Current Total AMS가 양허표에 제시된 연도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농업협정 제6조 제3항)

2. 허용보조(Green Box)

1) 허용보조의 유형

○ 허용보조란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국내보조로서 크게 **정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분류

2) 허용보조의 요건

○ 허용보조는 **기본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1항)과 각 **정책 특정적 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2항~제13항)을 충족시켜야 함

<허용보조 기본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1항)>

1. 허용보조는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함

(a) 징수 감면을 포함한 공적 기금의 정부 프로그램(징수감면액 포함)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b)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함

1. Domestic support measures for which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is claimed shall meet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y have no, or at most minimal, trade-distorting effects or effects on production. Accordingly, all measures for which exemption is claimed shall conform to the following basic criteria :

(a) the support in question shall be provided through a publicly-funded government programme (including government revenue foregone) not involving transfers from consumers; and,

(b) the support in ques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providing price support to producers;

3) 허용보조의 정책 특정적 요건

①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 농업 또는 농촌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과 관련되며,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제외

i) 조사연구(Research) : 일반연구, 환경프로그램 및 특정품목 관련 연구 등

ii) 검역 및 방제(Pest and disease control) : 조기경보체제, 검역·박멸 등 일반적인 품목특정적 병해충 방제조치 등

iii) 교육·훈련(Training services) : 일반 및 전문가 훈련시설

iv) 지도 및 자문(Extension and advisory services)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의 정보 전달 설비 지원, 지도 자문 활동 지원을 포함

v) 검사(Inspection services) : 건강, 안전성, 등급, 표준화 등에 대한 검사 서비스

vi) 유통 및 판촉 서비스(Marketing and promotion services) :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정보, 조언 및 판매촉진이 포함

- 단, 목적이 불명확한 보조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구매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direct economic benefits)을 주는 보조는 제외

vii) 하부구조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s) : 전력공급망, 도로 및 기타 운송수단, 시장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댐 및 배수계획, 환경과 관련된 하부구조

- 단, 일반적인 공공시설 중 고정설비의 제공이나 건설에 직결되며 공공시설이 아닌 농업시설(on-farm facilities) 공급을 위한 보조와 투입재, 운영비용, 시설 사용자에 대한 특혜요금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식량안보 목적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하여 비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비축제가 해당

<요건>

i) 법률에 따라 식량안보 계획에 포함된 **농산물의 재고 보유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국내법에 명확한 비축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

ii) **재고량은** 식량안보 목적으로 **사전 결정된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축목표량이 총생산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허용보조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iii) **재고유지와 처분과정**은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함

iv) **정부구매**는 구매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판매는** 판매당시 동일 품질 품목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함

- 개도국의 경우 관리가격으로 구매·방출을 할 수 있으나, 다만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는 당해 품목의 AMS에 포함시켜야 함

③ **국내식량원조(Domestic food aid)**

: 개도국이 자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에게 제공하는 식량구호**가 이에 해당하며, **영양학적 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함

- 영세민구호, 아동급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우유급식이 해당

<요건>

i) **식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시장가격 또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보조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해주는 형태이어야 함

ii) 정부는 현행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며 재정운영과 행정처리가 **투명**해야 함

④ **비 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 현재의 생산과 관계없이 **과거 일정시점**의 특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로서 **생산과 연계되어서는 안 됨**

<요건>

i) **과거 고정된 기준기간**중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생산이 요구되어서는 안 됨

* 고정된 기준기간 동안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 여부, 생산요소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

ii)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산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하여서는 안 됨

iii)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안 됨

iv)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하여서는 안 됨

⑤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보조**(Government financial participation in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준이상의 농업손실을 발생한 농가를 보조

<요건>

i)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 또는 **순소득 상당치의 30%를 초과**하는 **농업손실이 있는 농가**를 대상

ii) 손실보전기준

- 생산자 **손실의 70% 미만을 보상**
- **소득을 기준으로 지불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국내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와 연계해서는 안 됨

– 동일년도의 수혜금액은 자연재해구호를 위한 지불을 포함하여 생산자 총 소득 손실의 100% 미만이어야 함

⑥ 자연재해보조(Payments for relief from natural disasters)

: 자연재해* 보조라 함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지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

* 자연재해라 함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염병, 병해충, 핵사고, 영토 내의 전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요건>

i) 수혜자격

– 정부당국이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병의 발발, 병해충, 핵사고, 해당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전쟁)가 발생했거나 발생중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수혜자격이 발생

–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생산손실**이 발생한 농민을 대상

ii) 재해구호 손실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가축(동물의 수의적 치료와 관련된 지출 포함), 토지, 생산요소의 손실을 대상

iii) 지원한도

– 재해복구에 필요한 총비용 이내에 한하며, 미래의 생산량 혹은 생산형태와 연계되어서는 안 됨

⑦ 생산자은퇴를 통한 구조조정지원(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s)

: 은퇴농, 이농대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

<요건>

i) 탈농지원 계획에 수혜자격이 명백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의 은퇴 또는 비농업활동으로의 이동을 대상으로 함

ii) 지불조건

- 지불은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지불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⑧ 투자를 통한 구조조정지원(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investment aids)

: 구조적으로 불리한 생산자의 **재정적·물리적 구조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건>

i) 수혜자격

-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생산자의 재정적 또는 물리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결정

ii) 지불기준

-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의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됨
- 보조금 지급 대가로 수혜자에게 특정 품목의 생산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품목의 생산을 의무화하거나 생산될 농산물을 지정할 수 없음**
-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끝난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구조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⑨ 자원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

: **휴경계획**이라고도 하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감산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소득 보상적 성격의 보조

<요건>

i) 수혜자격

– 토지, 가축 등 농업생산요소를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 또한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함

•농지 : 최소한 3년 동안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휴경

•가축 :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

ii) 지불기준

– 휴경대상 농지 또는 기타 자원의 상업적 농산물 생산과 관계되는 다른 대체용도를 요구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할 것

– 생산형태, 생산량,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에 연계시키지 아니할 것

⑩ 환경계획 지원(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

: 국내 **환경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와 같은 특정 **생산요소의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생산 및 소득손실 또는 비용을 보전

<요건>

i) 수혜자격

– 명확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동 프로그램의 특정 조건(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한 조건 등)을 만족시켜야 함

ii) 지불기준

–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

⑪ 지역지원계획 지원(Payments under regional assistance programmes)

: 낙후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생산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전

* 낙후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며 경제적·행정적 실체를 갖춘 지리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

<요건>

i) 수혜자격 : 법령이나 규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명백하게 낙후된 지역이라고 설정된 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함

ii) 지불기준

- 지불기준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의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기초하거나 관련되어서는 안 됨
- 보조금 지급 대상은 낙후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에게 지급 가능
- 생산요소의 지급 단가는 일반적 지역의 한계수준(한계비용, 단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총지급액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

⑫ 기타 허용 보조

: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생산자에 대해 직접보조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책이 허용보조가 될 수 있음

- 특정년도의 소득 지원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의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어서는 안 됨**
- 특정년도의 소득 지원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의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어서는 안 됨**
- 특정년도의 소득 지원 규모는 **기준 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어서는 안 됨**

※ 허용보조(Green Box) 사업의 종류

보조유형	사 업 종 류
1. 정부서비스	※정부가 직접 행하는 사업
가. 일반서비스	
(1) 조사·연구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농업통계조사, 축산물유통 및 가격조사, 농업과학기술연구 등
(2) 검역·방제사업	구제역 방역, 가축진료시설지원, 동물·식물검역기능 등
(3) 교육·훈련사업	농업인교육훈련, 수의사교육, 농업인전문학교지원 등
(4) 지도·자문사업	가공산업경영지도, 양축농가경영기술지도 등
(5) 검사	농산물검사행정비, 농축산물검사, 축산물등급판정 등
(6) 유통·판촉지원	꽃박람회개최, 한우경진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7) 하부구조사업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일반용수개발, 농산물직거래시설지원, 방조제축조, 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
나. 공공비축	공공비축제
다. 국내식량원조	학교우유급식지원
2.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보조금
가. 비연계소득보조	논농업직접지불, 경영이양직불, 부채경감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정책자금상환연기 등
나. 자연재해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복구지원, 재해대책융자금지원, 구제역이동제한지역내 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다. 자원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쌀생산조정제, 낙농폐업지원
라. 투자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사료제조시설지원, 임산물저장시설 등
마. 환경계획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축산직접지불, 환경농업지구조성, 환경농업시범마을지원, 오폐수처리시설지원 등
바. 기타생산자직접지불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 원칙적으로는 무역 및 생산 왜곡 효과가 있어 감축대상 보조이나 **생산을 제한한다는 조건**하에서 **감축의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한도도 없음**

–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EU간 이해대립 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Blair House Agreement)임

○ 허용보조의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 제한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매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UR 당시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을 양허하지 않았음

▶ Blue Box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 농업협정 제6조 제5항)

•농업협정 제6조제5항에 의하면 다음의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됨

–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EU, 노르웨이, 일본 등이 Blue box를 사용

※ 외국의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정책

<미국의 부족불지급제도(Deficiency Payment)*>

* 미국은 '95년에 블루박스를 활용한 바 있으며, 이를 WTO에 통보

○ 소맥, 옥수수, 보리, 귀리, 호밀, 면화, 쌀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융자가격과 시장가격 중 높은 것과 목표가격의 차(deficiency)를 품목별 휴경계획에 참여한 농가에게 지불

○ 미 의회는 매 5년마다 목표가격과 융자가격을 법제화하되,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음

* 목표가격 : 농산물에 대한 합당한 가격수준으로 소득지지 개념의 가격
융자가격 : 수확후의 농산물을 담보로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 수확 후 농산물을 판매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담보 농산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음

<EU의 면적기준보상직불(Compensatory Payment)*>

* '92년 도입되었으며, WTO에 2003/2004년까지 지급실적을 통보

○ 곡물류, 유지종자, 쇠고기 등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따른 농민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휴경 또는 감산의무가 부여됨

○ 일정규모(곡물생산량 92톤, 농지면적 20ha) 이상의 농민은 기준 면적의 15%를 휴경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4. 국내보조 지급현황[1)]

(단위 : 억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농업총생산액[2)]	267,361	290,519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AMS 전체 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보조금 총액[3)]	63,695	75,273	84,293	77,564	75,715	73,391	79,380	84,583	78,890	69,438
수출보조제외	63,683	75,249	84,263	77,528	75,566	73,200	79,121	84,317	78,643	69,182
감축 보 조	23,577	23,111	25,923	23,464	20,384	22,153	21,774	23,388	21,161	19,972
AMS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최소허용보조 (품목특정)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870	2,300	1,016
최소허용보조 품목불특정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144	4,372
허 용 보 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482	49,210
정부 서비스[4)]	24,790	33,849	38,546	35,812	36,803	33,043	34,952	34,076	34,698	29,607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5)]	15,112	17,980	19,416	17,837	17,758	17,498	21,733	26,279	22,190	19,062
개도국 우대보조[6)]	204	309	378	415	621	506	662	574	594	541
수 출 보 조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1) WTO에는 2004년 실적까지 통보
2) 농업총생산액 : 농림부 통계연보
3) 보조금 총액 : 허용보조 + 개도국우대보조 + 감축대상보조 + 수출보조
4) 정부서비스 : 정부의 일반서비스 + 식량안보비축 + 식량구호
5)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 생산중립소득지원 + 자연재해구호 + 구조조정투자지원 + 환경보전지원 + 기타 직접지불
6) 개도국우대보조 : 감축대상보조 성격이나 감축의무 면제

수 출 보 조

Ⅲ

1. 수출보조의 정의
2. 수출보조의 유형
3.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4. 수출보조 지급 현황

수출보조

1. 수출보조의 정의

○ 수출보조란 수출실적에 따라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농업협정 제1조 (e))

○ UR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수출보조는 공정한 교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어 대폭적인 감축을 거쳐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 농산물 과잉재고 상태에 있는 EU의 현실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보조금액 36%(개도국 24%), 지원물량의 21%(개도국 14%)감축에 합의

2. 수출보조의 유형

○ 농업협정은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수출보조의 유형을 6가지로 한정 (농업협정 제9조 제1항)

①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②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상업적 재고의 수출 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③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지불

④ 취급, 등급향상, 기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 ( ) 내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보조는 허용보조로 분류될 수 있음

⑤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 수출용 가공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

3.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 농업협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 운송비지원은 감축의무가 면제됨(**위의 수출보조 유형중 ④, ⑤**)

○ WTO 회원국 중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를 지급한 국가

– **한국, 인도, 모로코, 파키스탄, 태국, 튀니지**

4. 수출보조 지급현황

○ 우리나라는 기준기간인 '86~'90년동안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감축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출보조 지급이 불가능**

○ 다만, 농업협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개도국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 운송비 보조를 지급하고 있음

연도별 수출보조 지급현황

(단위 : 10억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절차

Ⅳ

1. US-Cotton subsidies 사건
2. Canada-Milk/Dairy 사건
3. 분쟁 해결절차

Ⅳ 분쟁 사례[1] 및 분쟁 해결 절차

1. US-Cotton subsidies 사건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미국 면화 생산자, 사용자, 수출자 등에게 제공되는 각종 국내 보조제도에 대해 브라질이 농업협정상 용인되지 않는 보조이며,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는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2) 농업협정 위반 여부

가) 농업협정 13조 나항(2호) 대상 여부

○ 브라질은 면화에 대한 미국의 각종 국내보조가 농업협정 13조나항(2)호에 의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동 국내보조는 13조나항(2)에 의거, 보조금 협정 관련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고 반박하였다.

나) 허용보조(부속서 2항) 해당 여부

○ 농업협정 부속서 2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국내보조인 허용보조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중 6조나항 비연계소득보조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 연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 또는 생산 형태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브라질은 2002년 미국 농업법에 따른 면화 보조금은 기준년도 이후 면화 생산자들의 과일, 채소 등의 식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되어 생산자들이 택한 생산 형태에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속서 2의 6조나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1) 분쟁사례는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김승호, 법영사, 2007)」에서 일부 인용

○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을 인정하여 미국 면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기준 기간 이후 생산자가 취한 생산형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농업협정 부속서 2의 6조나 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미국은 특정 작물의 재배에 관한 부정적 지침, 즉 특정 작물의 불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생산 형태와 관련되는 보조가 아니라고 상소하였다.

○ 상소기구는 부속서 2의 6조나 항은 문제가 되는 지불 금액과 동 보조금 수혜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 형태 간의 어떠한 관계도 절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보조금 제도는 그 수혜자자 식재한 생산 형태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하였으며 관련된다(related to)의 통상적인 의미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질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상을 기초로 상소기구는 동 면화보조금이 6조나 항에 합치되지 않으며 13조가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Canada-Milk/Dairy 사건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캐나다 우유 생산자가 해외 수출용 우유 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해외수출용 우유는 시중 가격보다 염가로 공급하므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므로 농업협정 제 9조 1항, 3조 3항, 1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2) 농업협정 위반 여부

가) 농업협정 9조 1항 다호 위반 여부

○ 패널은 우유 가공업자의 상업 수출용 우유 구매 가격은 국내 시장 판매용

우유 구매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협정 9조 1항 다호상의 보조금 지불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 그러나 상소기구는 보조금 지불의 존재여부는 객관적인 기준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비교 준거는 총 생산비가 되어야 하는데 동 사건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WTO에 합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농업협정 3조 3항, 8조 위반 여부

○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가 9조 1항 다호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해외 수출용 우유를 고려시 수출 물량이 양허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3조 3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상소기구는 9조 1항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농업협정 3조 3항을 위반하였다는 판정도 번복하였다.

○ 패널은 캐나다가 3조 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연히 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9조 1항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므로 농업협정 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번복하였다.

3. 분쟁 해결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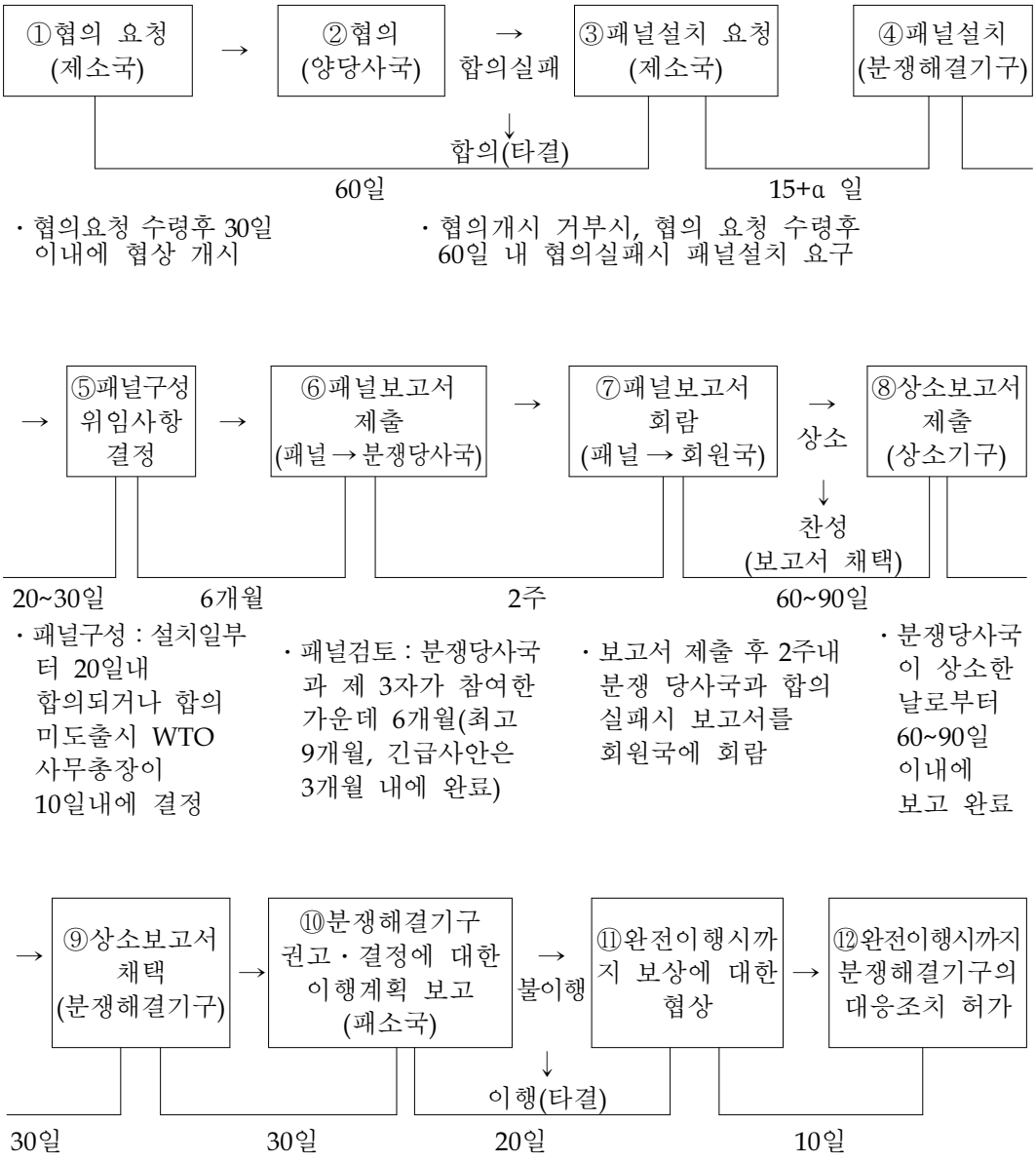

※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 : 국제간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

※ 상소기구 : WTO 산하에 7인의 상소기구위원을 중심으로 설치된 상설 기구

Q & A

V

1. 보조금 일반
2.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대상보조, 블루박스
3. 허용보조

Ⅴ Q&A

보조금 일반

1 한 농가가 여러 개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직불금의 상한선이 있는지요?

☞ 보조금 해당 농가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개별 직불금의 한도를 초과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각각의 직불금에 대해 수혜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 개의 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지불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직접지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WTO/DDA 및 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고 농가 소득은 점점 불안정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DDA협상 결과에 따라 가격지지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직접지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무역의 자유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대상 보조를 줄이고 감축 의무가 없는 허용보조를 늘려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3 농협이 지원하는 보조도 정부 보조에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정부보조라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농협,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가 정부 재정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 보조는 정부 보조에 해당됩니다.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대상보조

1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면 왜 무역왜곡이 초래 되나요?

☞ WTO는 세계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체계 구축이라는 취지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무역왜곡이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정부가 콩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만약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 콩 생산자는 시장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일정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콩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경향이 있어 외국의 콩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콩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시키는 감축대상보조입니다.

2 우리나라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라고도 하며,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감축대상보조(AMS)는 1조4,584억원, 최소허용보조 5,388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은 사용실적이 없는 바, 무역왜곡보조 총액 규모가 1조9,972억원입니다.

3 AMS가 무엇인가요?

☞ AMS는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약자로 보조총액 측정치라고도 하며 감축 의무가 있는 보조금 즉 감축대상보조를 계량화 한 것입니다.

4 품목특정 AMS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95년부터 '04년까지 품목특정 AMS 대상품목은 총 5개 품목(쌀, 보리, 옥수수, 콩, 유채)이었습니다.

- 이 중 옥수수는 '98년 이후 AMS대상 품목이 아니고, 콩은 '04년만 품목특정 AMS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5 협상이 끝난 후에 양허표 작성시 Base total AMS를 참고자료에 포함시키는데 Base total AMS란 무엇인가요?

☞ Base total AMS는 감축의 기준이 되는 총 감축대상 보조액이며, 우리나라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89~'91년 보조액을 기준으로 5개 품목(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의 수매 보조금에 대한 Base Total AMS를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쌀은 '91년 이후 쌀 수매보조가 크게 늘어 '93년을 기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AMS는 어떤 통화 단위로 측정이 되나요?

☞ AMS는 각 국의 통화로 측정이 됩니다.

- 우리나라는 '원'으로 표시되어 십억원 단위로 WTO에 통보가 됩니다.

7 인플레이션, 환율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AMS가 급증하여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WTO 농업협정문 제18조 4항에 따라 과도한 물가상승률이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데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참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4항 : 회원국은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물가 상승률이 회원국의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한다.

8 AMS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경우도 해당 되는데 시장금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장금리는 매년 농협에서 제공되는 가계일반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9 감축대상보조는 매년 얼마나 감축해야 되나요?

☞UR 협상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당시 개도국 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까지 총 감축대상보조의 13.3% 감축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10 만약 AMS 감축을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국내보조 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GATT 및 WTO농업협정에 따라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특히, WTO농업협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위원회는 매년 3~4회에 걸쳐 각 회원국의 보조금 이행 상황을 검토하며, 검토과정에서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농업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농업위원회는 해당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혹은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11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보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이에 속하며 계산시 이용되는 [illegible]

☞수매제도가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보조에 해당되며, 고정외부참조가격은 국제가격으로 '86~'88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FOB : Free on board)이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의미합니다.

12 비면제직접지불을 통한 보조는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보조라고 했는데 목표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 현재 비면제 직접지불에 해당하는 대표적 보조금 사업이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이 있으며, 그 밖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추곡수매제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는 어떤 보조에 해당 되나요?

☞ 추곡수매제도는 200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추곡수매제 철폐이후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공비축제는 보조금 중 허용보조(3항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에 해당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허용보조(6항 비연계소득보조), 변동직접지불금은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 우리나라는 블루박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허용보조

1 '허용보조'는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보조라고 정의 내렸는데 미미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농업협정문에는 "no or at most minimal trade-distorting..."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국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무역 상대국은 해당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 품목의 무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감축대상 보조라는 의견을 WTO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허용보조는'한도'가 없는데 왜 허용보조 지급액을 계속 늘려가지 않나요?

☞ 허용보조는 감축대상 보조와 달리 한도가 없습니다. 허용보조의 기본적 요건과 정책 특정적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WTO의 보조금한도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농림업 분야 예산은 다른 분야예산과 균형을 맞추어 배정되어지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무제한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허용보조'를 크게 정부서비스분야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분야로 분류되는데 향후 어느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는가요?

☞ 우리나라는 '04년 기준 정부서비스 분야 보조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보다 약 55% 더 큽니다.

- 농산물 시장은 DDA 및 FTA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그 개방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 중심의 직불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4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3항)’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량의 특정품목을 구입하고 재고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식량구매는 현행시장가격에 의하며 재고의 판매는 현행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04년 쌀 수매제를 철폐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5 ‘공공비축제(3항)’의 사전 결정 목표량, 재고량 수준, 처분 방법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 공공비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사전결정 목표량, 재고량 수준, 처분 방법 등)은 「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FAO 권고 등을 고려, ’05년부터 ’07년까지(3년) 적정 비축규모를 86.4만톤 내외(2개월분 또는 연간 소비량의 17%수준)로 정했습니다.

– ’08년도에 비축목표를 새로 설정하였으며, 소비량을 감안 연간 비축규모는 72만톤으로 하고 매년 36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08년 매입물량은 40만톤, ’09년은 37만톤, ’10년은 36만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매입양곡은 전국에 있는 정부양곡 창고(4천여개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기준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군대 및 가공업소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6 ‘비연계소득보조(6항)’의 수혜자격은 어떤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비연계소득보조의 수혜자격은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사업이 비연계소득보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비연계소득보조(6항)’에서 과거 고정된 기준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고정기간은 얼마나 길게 정해야 하고 업데이트는 [illegible]

☞ 비연계소득보조는 현재의 생산과 무관하게 과거 일정시점의 특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입니다.

– 동 보조의 조건 중 하나가 기준기간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기준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혹은 업데이트는 언제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업협정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현재 DDA협상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보조(7항)’에서 소득안전망이란 [illegible]

☞ 소득안전망이란 자연재해, 가격불안 등 위험으로부터 농가소득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보조는 농가가 과거와 비교하여 당해 년도에 농업소득의 30%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소득 손실분의 7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자연재해보조(8항)’에서 자연재해는 어떤 것이며 축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같은 농업 생산요소의 손실도 [illegible]

☞ 자연재해란 가뭄, 홍수 등의 일반적인 의미의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전염병, 병해충, 핵사고 전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축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이 복구에 따른 지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지원 계획(13항)'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진 지역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역지원 계획이란 낙후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생산 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낙후지역에 대한 정의는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적용 지역에 관해서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그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밭, 과수원 등) 및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한함)
–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도서(제주도 포함)는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지급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04~'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04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11 감축대상 보조의 투입재 보조, 유통비용보조와 허용보조의 하부구조서비스 보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의 기본적인 차이는 ①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야 하고 ②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지 여부입니다.

– 기타 감축대상보조에서 투입재 보조(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기자재, 종자, 농업용수 등)와 유통비용보조(영농자금지원, 운송비 등)는 보조를 함으로서 농업 생산이 증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면, 허용보조의 하부구조서비스(전력공급망, 도로 및 기타 운송수단, 시장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댐 및 배수계획 등)는 특정 농가를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는 생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허용보조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12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11항)'과 '지역지원(13항)'에 명시된 '불리한 생산여건'은 같은 의미인가요?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생산여건에 있는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농지매매 사업, 유통센타 건립 지원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지원에서 불리한 생산여건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불리한 지역을 의미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3 '자원폐기 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10항)'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일정기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그 토지에 농사를 지어도 [illegible]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최소한 3년 동안 휴경해야 하며 가축의 경우 도살 또는 영구적으로 처분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3년이 흐른 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참 고

1. WTO 농업협정문

2.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논의 동향

< 참고 1 >

WTO 농업협정문

Contents

○ Part I
• Article 1 Definition of Terms ····· 60
• Article 2 Product Coverage ····· 64

○ Part II
• Article 3 Incorporation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 66

○ Part III
• Article 4 Market Access ····· 66
• Article 5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 68

○ Part IV
• Article 6 Domestic Support Commitments ····· 76
• Article 7 General Disciplines on Domestic Support ····· 78

○ Part V
• Article 8 Export Competition Commitments ····· 80
• Article 9 Export Subsidy Commitments ····· 80
• Article 10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 86
• Article 11 Incorporated Products ····· 88

○ Part VI
• Article 12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 88

○ Part VII
• Article 13 Due Restraint ····· 90

목 차

○ 제 1 부
- 제 1 조 용어의 정의 ····· 4
- 제 2 조 대상 품목 범위 ····· 5

○ 제 2 부
- 제 3 조 양허 및 약속의 통합 ····· 6

○ 제 3 부
- 제 4 조 시장접근 ····· 7
- 제 5 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 9

○ 제 4 부
- 제 6 조 국내보조 약속 ····· 7
- 제 7 조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 9

○ 제 5 부
- 제 8 조 수출경쟁 약속 ····· 8
- 제 9 조 수출보조금 약속 ····· 8
- 제 10 조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 8
- 제 11 조 원료농산물 ····· 9

○ 제 6 부
- 제 12 조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 ····· 9

○ 제 7 부
- 제 13 조 적절한 자제 ····· 9

○ Part Ⅷ
• Article 14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92

○ Part Ⅸ
• Article 15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94

○ Part Ⅹ
• Article 16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 94

○ Part Ⅺ
• Article 17 Committee on Agriculture ····· 96
• Article 18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 96
• Article 19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 98

○ Part Ⅻ
• Article 20 Continuation of the Reform Process ····· 98

○ Part ⅩⅢ
• Article 21 Final Provisions ····· 100

• ANNEX 1 PRODUCT COVERAGE ····· 102
• ANNEX 2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 104
• ANNEX 3 DOMESTIC SUPPORT:CALCULATION OF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118
• ANNEX 4 DOMESTIC SUPPORT: CALCULATION OF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 122
• ANNEX 5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4 ····· 124

○ 제 8 부
· 제 14 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39

○ 제 9 부
· 제 15 조 특별 및 차등대우 ····· 59

○ 제 10 부
· 제 16 조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 59

○ 제 11 부
· 제 17 조 농업위원회 ····· 77
· 제 18 조 약속이행의 검토 ····· 79
· 제 19 조 협의 및 분쟁해결 ····· 99

○ 제 12 부
· 제 20 조 개혁과정의 계속 ····· 99

○ 제 13 부
· 제 21 조 최종조항 ····· 101

· 부속서 1 대상 품목 범위 ····· 103
· 부속서 2 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 501
· 부속서 3 국내보조 :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 ····· 911
· 부속서 4 국내보조 :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 ····· 921
· 부속서 5 제 4조 제 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 951

AGREEMENT ON AGRICULTURE

Members,

Having decided to establish a basis for initiating a process of reform of trade in agriculture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as set out in the Punta del Este Declaration;

Recalling that their long-term objective as agreed at the Mid-Term Review of the Uruguay Round "is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 and that a reform process should be initiated through the negotiation of commitments on support and protection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Recalling further that "the above-mentioned long-term objective is to provide for 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s in agricultural support and protection sustained over an agreed period of time, resulting in correcting and preventing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Committed to achieving specific binding commitment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s: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export competition; and to reaching an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issues;

Having agreed that in implementing their commitments on market access, developed country Members would take fully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by providing for a greater improvement of opportunities and terms of access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se Members, including the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tropical agricultural products as agreed at the Mid-Term Review, and for product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from the growing of illicit narcotic crops;

농업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명시된 협상목적에 따라 농산물무역의 개혁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 시 합의된 장기목적이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확립이며, 개혁과정은 보조 및 보호에 관한 약속 협상 및 강화되고 운영상 보다 효율적인 GATT 규칙과 규율의 수립을 통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나아가 위에서 언급된 장기목적이 합의된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된 농업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고,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달성할 것과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하고,

선진국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시장접근에 관한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중간평가시 합의 한 바 있는 열대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포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에 특별히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시장 접근기회 및 조건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Noting that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 should be made in an equitable way among all Members, having regard to non-trade concer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having regard to the agreement tha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is an integral element of the negotiation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Hereby agree as follows:

Part I

Article 1
Definition of Terms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AMS" mean the annual level of support, expressed in monetary terms, provided for an agricultural product in favour of the producers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or non-product-specific support provided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in general, other than support provided under programmes that qualify as exempt from reduction under Annex 2 to this Agreement, which is: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i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3 of this Agreemen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유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유의하고, 아울러 개혁계획의 이행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은 모든 회원국간에 공평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가. "보조총액측정치"는 기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동 보조총액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중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b) "basic agricultural product" in relation to domestic support commitments is defined as the product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point of first sale as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and in the related supporting material;

(c) "budgetary outlays" or "outlays" includes revenue foregone;

(d)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means the annual level of support, expressed in monetary terms, provided to producers of a basic agricultural produ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one or more measures, the calculation of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AMS methodology is impracticable, other than support provided under programmes that qualify as exempt from reduction under Annex 2 to this Agreement, and which is: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i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4 of this Agreemen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e) "export subsidies" refers to subsidie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f) "implementation period" means the six-year period commencing in the year 1995, except tha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it means the nine-year period commencing in 1995;

(g) "market access concessions" includes all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h)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Total AMS" mean the sum of all domestic support provided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calculated as the sum of all aggregate measurements of support for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ll non-product-specific aggregate measurements of support and all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which is:

나. 국내보조 약속과 관련하여 "기초농산물" 이란 회원국의 양허표와 관련 보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품목을 말한다.

다. "재정지출" 또는 "지출" 에는 징수감면액이 포함된다.

라. "보조상당측정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로서 보조총액측정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또한 동 보조상당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의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4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마. "수출보조금" 은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바. "이행기간" 은 제13조의 목적상 1995년 시작되는 9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5년 시작되는 6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사. "시장접근양허" 는 이 협정에 따라 행한 모든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한다.

아. "보조총액측정치합계"는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총액측정치와 모든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총액측정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상당측정치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동 보조총액측정치합계는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i.e. the "Base Total AMS") and the maximum support permitted to be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or thereafter (i.e. the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as specified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ii)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support actually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i.e. the "Current Total AM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rticle 6, and with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i) "year" in paragraph (f) above and in relation to the specific commitments of a Member refers to the calendar, financial or marketing year specified in the Schedule relating to that Member.

Article 2
Product Coverage

This Agreement applies to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1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ricultural products.

(1)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즉, "기준 보조총액측정치합계")와 이행기간 중의 특정년도 또는 그 이후에 제공이 허용된 최대보조 (즉,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2) 이행기간 중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 (즉,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와 관련, 제6조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자. 바호에 언급된 그리고 회원국의 구체적인 약속과 관련된 "연도" 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역년, 회계년도 또는 유통년도를 의미한다.

제 2 조
대상 품목범위

이 협정은 이 협정 부속서 1에 열거된 품목에 적용되며,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Part Ⅱ

Article 3
Incorporation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1. The domestic support and export subsidy commitments in Part IV of each Member's Schedule constitute commitments limiting subsidization and are hereby made an integral part of GATT 1994.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a Member shall not provide support in favour of domestic producers in excess of the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Section I of Part IV of its Schedule.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b) and 4 of Article 9, a Member shall not provid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 in respec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specified in Section II of Part IV of its Schedule in excess of the budgetary outlay and quantity commitment levels specified therein and shall not provide such subsidies in respect of any agricultural product not specified in that Section of its Schedule.

Part Ⅲ

Article 4
Market Access

1. Market access concessions contained in Schedules relate to bindings and reductions of tariffs, and to other market access commitments as specified therein.

제 2 부

제 3 조
양허 및 약속의 통합

1. 각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 약속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속을 구성하며, 이로써 1994년도 GATT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1절에 명시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2항나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 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동 품목군과 관련 동 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및 물량에 대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동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3 부

제 4 조
시 장 접 근

1. 양허표에 포함된 시장접근양허는 관세의 양허 및 감축과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시장접근 약속에 관련된다.

2. Members shall not maintain, resort to, or revert to any measures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5 and Annex 5.

Article 5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b) of Article II of GATT 1994, any Member may tak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and 5 below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n agricultural product, in respect of which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nverted into an ordinary customs duty and which is designated in its Schedule with the symbol "SSG" as being the subject of a concession in respect of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ay be invoked, if:

(a) the volume of imports of that product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Member granting the concession during any year exceeds a trigger level which relates to the existing market access opportunity as set out in paragraph 4; or, but not concurrently:

(b) the price at which imports of that product may enter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Member granting the concession,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i.f. import price of the shipment concerned expressed in terms of its domestic currency, falls below a trigger price equal to the average 1986 to 1988 reference price[2] for the product concerned.

---

1) These measures include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variable import levies, minimum import prices,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non-tariff measures maintained through state-trading enterprise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nd similar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whether or not the measures are maintained under country-specific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f GATT 1947, but not measures maintained under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or under other general, non-agriculture-specific provisions of GATT 1994 or of the oth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2) The reference price used to invoke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in general, be the average c.i.f. unit value of the product concerned, or otherwise shall be an appropriate price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its stage of processing. It shall, following its initial use, be publicly specified and available to the extent necessary to allow other Members to assess the additional duty that may be levied.

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1. 1994년도 GATT 제2조 제1항(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

   가.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물량이 특정 년도에 제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접근 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나.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2]인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 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호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 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및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Imports under current and minimum access commitments established as part of a conce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count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volume of imports required for invok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a) and paragraph 4, but imports under such commitments shall not be affected by any additional duty imposed under either subparagraph 1(a) and paragraph 4 or subparagraph 1(b) and paragraph 5 below.

3. Any supplies of the product in question which were en route on the basis of a contract settled before the additional duty is imposed under subparagraph 1(a) and paragraph 4 shall be exempted from any such additional duty, provided that they may be counted in the volume of imports of the product in question during the following year for the purposes of trigger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a) in that year.

4. Any additional duty imposed under subparagraph 1(a) shall only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has been imposed, and may only be levied at a level which shall not exceed one third of the level of the ordinary customs duty in effect in the year in which the action is taken. The trigger level shall be set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dule based on market access opportunities defined as imports as a percentage of the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3] during the three preceding year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a) where such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a product are less than or equal to 10 per cent, the base trigger level shall equal 125 per cent;
   (b) where such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a product are greater than 10 per cent but less than or equal to 30per cent, the base trigger level shall equal 110 per cent;
   (c) where such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a product are greater than 30 per cent, the base trigger level shall equal 105 per cent.

3) Where domestic consump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base trigger level under subparagraph 4(a) shall apply.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양허의 일부로서 설정된 현행 및 최소시장접근 약속하의 수입은 제1항 가호와 제4항의 규정 원용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 산정에는 포함되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수입은 제1항 가호 및 제4항 또는 제1항 나호 및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 가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운송 중에 있는 당해 품목의 공급물량은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동 물량은 다음해에 제1항 가호의 규정을 발동할 목적으로 동 품목의 다음해의 수입량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1항 가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동 추가관세가 부과된 당해 년도의 말까지만 유지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지는 해에 유효한 일반 관세의 1/3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발동수준은 시장접근기회에 기초한 아래 표에 따라 설정하되 동 시장 접근기회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이전 3년 동안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3]에 대한 수입비율로서 정의된다.

   가.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25%가 된다.

   나.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보다 크고 3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10%가 된다.

   다.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보다 큰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05%가 된다.

3) 국내소비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가호에 따라 기준발동수준이 적용된다.

In all cases the additional duty may be imposed in any year where the absolute volume of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Member granting the concession exceeds the sum of (x) the base trigger level set out above multiplied by the average quantity of imports during the three preceding year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and (y) the absolute volume change in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 concerned in the most recent yea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compared to the preceding year, provided that the trigger level shall not be less than 105 per cent of the average quantity of imports in (x) above.

5. The additional duty imposed under subparagraph 1(b) shall be set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dule:
   (a)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f. import price of the shipment expressed in terms of the domestic curr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ort price") and the trigger price as defined under that subparagraph is less than or equal to 10 per cent of the trigger price, no additional duty shall be imposed;
   (b)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 price and the trigger pr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fference") is greater than 10 per cent but less than or equal to 40percent of the trigger price, the additional duty shall equal 30 per cent of the amount by which the difference exceeds 10 per cent;
   (c) if the difference is greater than 40percent but less than or equal to 60percent of the trigger price, the additional duty shall equal 50percent of the amount by which the difference exceeds 40 per cent, plus the additional duty allowed under (b);
   (d) if the difference is greater than 60 per cent but less than or equal to 75 per cent, the additional duty shall equal 70percent of the amount by which the difference exceeds 60percent of the trigger price, plus the additional duties allowed under (b) and (c);
   (e) if the difference is greater than 75percent of the trigger price, the additional duty shall equal 90percent of the amount by which the difference exceeds 75percent, plus the additional duties allowed under (b), (c) and (d).

6. For perishable and seasonal products, the conditions set out above shall be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take account of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ch products. In particular, shorter time periods under subparagraph 1(a) and paragraph 4 may be used in reference to the corresponding periods in the base period and different reference prices for different periods may be used under subparagraph 1(b).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정년도의 추가적인 관세는 당해년도에 양허를 행한 회원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당해품목의 절대 수입량이 상기에 설정된 기준발동수준에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곱한 것(x)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량의 전년도대비 절대변화량(y)을 더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단, 발동수준은 상기(x)에 있어서 평균수입량의 105%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나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가.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과 제1항 나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라 한다)가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가 된다.

다.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에 나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라.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에 나호와 다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마.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큰 경우,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6.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이러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특히, 제1항 가호와 제4항에서의 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 기간 중의 상응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기간에 대한 상이한 참조가격은 제1항 나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7.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safeguard shall be carried out in a transparent manner. Any Member taking action under subparagraph 1(a) above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including relevant data,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s far in advance as may be practicable and in any event within 10 day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action. In cases where changes in consumption volumes must be allocated to individual tariff lines subject to action under paragraph 4, relevant data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and methods used to allocate these changes. A Member taking action under paragraph 4 shall afford any interested Members the opportunity to consult with it in respect of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such action. Any Member taking action under subparagraph 1(b) above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including relevant data,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within 10 day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such action or, for perishable and seasonal products, the first action in any period. Members undertake, as far as practicable, not to tak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b) where the volume of imports of the products concerned are declining. In either case a Member taking such action shall afford any interested Members the opportunity to consult with it in respect of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such action.

8. Where measures are taken in conformity with paragraphs 1 through 7 above, Members undertake not to have recourse, in respect of such measures,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a) and 3 of Article XIX of GATT 1994 or paragraph 2 of Article 8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9.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duration of the reform process as determined under Article 20.

7.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은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제1항 가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그리고 늦어도 이러한 조치 이행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비량의 변화량이 제4항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 개별관세 품목 분류번호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량을 할당하는데 사용된 정보나 방법이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 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의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게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위의 제1항 나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첫 번째 조치 이행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느 기간에도 첫 번째 조치 이행후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당해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위의 제1항 나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 대하여 동 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

8. 위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제1항(a)과 제3항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협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개혁 과정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Part Ⅳ

Article 6
Domestic Support Commitments

1. The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of each Member contained in Part IV of its Schedule shall apply to all of its domestic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with the exception of domestic measures which are not subject to reduction in terms of the criteria set out in this Article and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The commitments are expressed in terms of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2. In accordance with the Mid-Term Review Agreement that government measures of assistance, whether direct or indirect, to encourag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grammes of developing countries, investment subsidies which are generally available to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agricultural input subsidies generally available to low-income or resource-poor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be exempt from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that would otherwise be applicable to such measures, as shall domestic support to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encourage diversification from growing illicit narcotic crops. Domestic support meeting the criteria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3. A Member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mpliance with its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in any year in which its domestic support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expressed in terms of Current Total AMS does not exceed the corresponding annual or final bound commitment level specified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4. (a) A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include in the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reduce:

제 4 부

제 6 조
국내보조 약속

1. 각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포함된 국내보조 감축약속은 이 조와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감축대상이 아닌 국내조치를 제외한 농업생산자를 위한 모든 국내보조조치에 적용된다. 약속은 보조총액측정치의 합계와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으로 표시된다.

2. 농업 및 농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조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간평가합의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서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과 개발도상회원국의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금은 그 밖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보조 감축 약속에서 면제되며, 또한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 장려를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국내보조도 국내보조 감축약속에서 면제된다.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보조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특정년도에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따라 표시된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 보조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당해 연간 또는 최종 양허약속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가. 회원국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보조를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i) product-specific domestic support which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AMS where such support does not exceed 5percent of that Member's total value of production of a basic agricultural product during the relevant year; and

(ii) non-product-specific domestic support which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AMS where such support does not exceed 5percent of the value of that Member's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b)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 de minimis percentag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10percent.

5. (a) Direct payments under production-limiting programm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commitment to reduce domestic support if:

(i)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rea and yields; or

(ii)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per cent or less of the base level of production; or

(iii)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number of head.

(b) The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for direct payments meeting the above criteria shall be reflected by the exclusion of the value of those direct payments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Article 7
General Disciplines on Domestic Support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ny domestic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which are not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because they qualify under the criteria set out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are maintained in conformity therewith.

(1)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당해년도 중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그리고

(2)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보조로서

나.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최소허용비율은 10%로 한다.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합계를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제 7 조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 부속서 2에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기 때문에 감축약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가 동 기준에 합치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2. (a) Any domestic support measure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including any modification to such measure, and any measure that is subsequently introduced that cannot be shown to satisfy the criteria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or to be exempt from reduction by reason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b) Where no Total AMS commitment exists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the Member shall not provide support to agricultural producers in excess of the relevant de minimis level set out in paragraph 4 of Article 6.

Part V

Article 8
Export Competition Commitments

Each Member undertakes not to provide export subsidies otherwise than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and with the commitments as specified in that Member's Schedule.

Article 9
Export Subsidy Commitments

1. The following export subsidies are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a) 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direct subsidies, including payments-in-kind, to a firm, to an industry, to producers of an agricultural product, to a cooperative or other association of such producers, or to a marketing board, contingent on export performance;

2. 가. 국내보조조치의 수정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와 추후 도입되는 조치로서 이 협정 부속서 2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조치는 회원국의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의 계산에 포함된다.

나.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보조총액측정치합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회원국은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관련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5 부

제 8 조
수출경쟁 약속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9 조
수출보조금 약속

1. 다음의 수출보조금은 이 협정에 따라 감축약속의 대상이 된다.

가.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b) the sale or disposal for export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non-commercial stock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a price low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product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

(c) payments 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that are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al action, whether or not a charge on the public account is involved, including payments that are financed from the proceeds of a levy impo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or on an agricultural product from which the exported product is derived;

(d) the provision of subsidies to reduce the costs of marketing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widely available export promotion and advisory services) including handling, upgrading and other processing costs, and the costs of international transport and freight;

(e) internal transport and freight charges on export shipments, provided or mandated by governments,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for domestic shipments;

(f) subsidies on agricultural products contingent on their incorporation in exported products.

2. (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 export subsidy commitment levels for eac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s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represent with respect to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 in the case of budgetary outla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level of expenditure for such subsidies that may be allocated or incurred in that year in respect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concerned; and

(ii) in the case of export quantit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quantity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such export subsidies may be granted in that year.

(b) In any of the second through fifth years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Member may provid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in a given year in excess of the corresponding annual commitment levels in respect of the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specified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provided that:

나.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다.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라. 취급, 등급향상 및 기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마. 국내 수송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바.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2. 가. 아래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기간중 각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은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의미한다.

(1) 재정지출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중 관련 농산물 또는 농산물 품목군에 할당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의 최대수준, 그리고

(2) 수출물량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품목군의 최대물량

나.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회원국은 이행기간의 제2차년도에서 제5차년도의 기간 중 어느 특정년도에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i) the cumulative amounts of budgetary outlays for such subsid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rough the year in question, does not exceed the cumulative amount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outlay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by more than 3 per cent of the base period level of such budgetary outlays;

(ii) the cumulative quantities exported with the benefit of such export subsid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rough the year in question, does not exceed the cumulative quantitie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quantity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by more than 1.75 per cent of the base period quantities;

(iii) the total cumulative amounts of budgetary outlays for such export subsidies and the quantities benefiting from such export subsidies over the entire implementation period are no greater than the total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and

(iv) the Member's budgetary outlays for export subsidies and the quantities benefiting from such subsidies, at the conclus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re no greater than 64percent and 79percent of the 1986-1990 base period levels, respectively.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se percentages shall be 76 and 86 per cent, respectively.

3. Commitments relating to limitations on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export subsidization are as specified in Schedules.

4.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in respect of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subparagraphs (d) and (e) of paragraph 1 above, provided that these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ircumvent reduction commitments.

(1)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 중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누적된 재정 지출액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지출 약속 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액을 이러한 재정지출의 기준기간 수준의 3%이상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 중 이러한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고 수출되는 누적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물량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물량을 기준기간 물량의 1.75% 이상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전체 이행기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액의 누적액과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는 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4) 이행기간 종료 시의 수출보조금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지출액 및 이러한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각각 1986-1990의 기준기간 수준의 64%와 79%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동 비율이 각각 76% 및 86%가 된다.

3. 수출보조금 지급의 범위확대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약속은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이행기간 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제1항라호 및 마호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단, 동 수출보조금이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0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1. Export subsidies not lis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results in, or which threatens to lead to,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nor shall non-commercial transactions be used to circumvent such commitments.

2. Members undertake to work towar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agreed disciplines to govern the provision of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and, after agreement on such disciplines, to provide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only in conformity therewith.

3. Any Member which claims that any quantity exported in excess of a reduction commitment level is not subsidized must establish that no export subsidy, whether listed in Article 9 or not, has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quantity of exports in question.

4. Members donors of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ensure:
   (a) that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food aid is not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o recipient countries;
   (b) that international food aid transactions, including bilateral food aid which is monetized,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system of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 and
   (c) that such aid shall b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in fully grant form or on terms no less concessional than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Food Aid Convention 1986.

제 10 조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1. 제9조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출보조금이 수출보조금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상업적 거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의 제공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규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동 규율에 합치하여서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 감축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물량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가.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한다.

   나. 금전화된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판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다.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으로 제공된다.

Article 11
Incorporated Products

In no case may the per-unit subsidy paid on an incorporated agricultural primary product exceed the per-unit export subsidy that would be payable on exports of the primary product as such.

Part Ⅵ

Article 12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1. Where any Member institutes any new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foodstuff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of Article XI of GATT 1994, the Memb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ovisions:
   (a) the Member instituting the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ffects of such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importing Members' food security;
   (b) before any Member institutes an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i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as far in advance as practicable,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comprising such information as the nature and the duration of such measure, and shall consult, upon request, with any other Member having a substantial interest as an importer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ed to the measure in question. The Member instituting such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shall provide, upon request, such a Member with necessary information.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 unless the measure is taken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which is a net-food exporter of the specific foodstuff concerned.

제 11 조
원료농산물

원료1차 농산물에 지급되는 단위당 보조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1차 농산물 자체의 수출에 지급되는 단위당 수출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부

제 12 조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

1.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a)에 따라 식량에 대한 새로운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가.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동 금지 또는 제한이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나. 회원국은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에 동 조치의 성격, 지속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통고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과 당해 조치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이러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동 조치가 해당 특정식량의 순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취한 것이 아닌 한, 이 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Part Ⅶ

Article 13
Due Restrai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Subsidies Agreement"):

(a) domestic support measures that conform fully to the provisions of Annex 2 to this Agreement shall be:

(i) non-actionable subsidies for purposes of countervailing duties[4];

(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Article XVI of GATT 1994 and Part III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i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non-violation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the benefits of tariff concessions accruing to another Member under Article II of GATT 1994, in the sense of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b) domestic support measures that conform ful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is Agreement including direct payments tha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5 thereof, as reflected in each Member's Schedule, as well as domestic support within de minimis levels and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Article 6, shall be:

(i) exempt from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unless a determination of injury or threat thereof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GATT 1994 and Part V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due restraint shall be shown in initiating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paragraph 1 of Article XVI of GATT 1994 or Articles 5 and 6 of the Subsidie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grant support to a specific commodity in excess of that decided during the 1992 marketing year; and

4) "Countervailing duties" wher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re those covered by Article VI of GATT 1994 and Part V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제 7 부

제 13 조
적절한 자제

1994년도 GATT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이 조에서는 "보조금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동안

가. 이 협정 부속서 2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보조조치는

(1) 상계관세[4]의 목적상 허용보조금이 된다.

(2) 1994년도 GATT 제16조 및 보조금협정 제3부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나. 최소 허용보조 수준이내의 보조, 이 협정 제6조 제2항에 합치하는 보조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듯이, 제 6조 제5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을 포함하여, 제6조 규정에 합치하는 국내보조는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상계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2)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 유통년도 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 또는 보조금협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4) 이 조에 언급된 "상계관세"란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5부의 대상이 되는 상계관세를 의미한다.

(i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non-violation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the benefits of tariff concessions accruing to another Member under Article II of GATT 1994, in the sense of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grant support to a specific commodity in excess of that decided during the 1992 marketing year;

(c) export subsidies that conform fully to the provisions of Part V of this Agreement, as reflected in each Member's Schedule, shall be:

(i) subject to countervailing duties only upon a determination of injury or threat thereof based on volume, effect on prices, or consequent imp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GATT 1994 and Part V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due restraint shall be shown in initiating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Article XVI of GATT 1994 or Articles 3, 5 and 6 of the Subsidies Agreement.

Part Ⅷ

Article 14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Members agree to give effect to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 유통년도 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 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다.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된 이 협정 제5부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은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물량, 가격에 미치는 효과 또는 결과적인 영향에 근거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시에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2) 1994년도 GATT 제16조 또는 보조금협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제 8 부

제 14 조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회원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을 시행하는 데에 합의한다.

Part Ⅸ

Article 15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1. In keeping with the recognition that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s an integral part of the negoti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respect of commitments shall be provided as set out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embodied in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2.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have the flexibility to implement reduction commitments over a period of up to 10 years.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Part Ⅹ

Article 16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take such action as is provided fo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2.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monitor, as appropriate, the follow-up to this Decision.

제 9 부

제 15 조
특별 및 차등대우

1.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에 따라, 약속과 관련한 특별 및 차등대우는 이 협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되고 양허 및 약속표에 구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공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융통성을 갖는다.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감축약속의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10 부

제 16 조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1. 선진국회원국은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계획의 있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결정의 틀 안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2. 농업위원회는 동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감시한다.

Part XI

Article 17
Committee on Agriculture

A Committee on Agriculture is hereby established.

Article 18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1.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negotiated under the Uruguay Round reform programme shall be reviewed by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2. The review process shall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notifications submitted by Members in relation to such matters and at such intervals as shall be determined, as well as on the basis of such documentation as the Secretariat may be requested to prepa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view process.

3. In addition to the notifications to be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y new domestic support measure, or modification of an existing measure, for which exemption from reduction is claimed shall be notified promptly. This notification shall contain details of the new or modified measure and its conformity with the agreed criteria as set out either in Article 6 or in Annex 2.

4. In the review process Members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influence of excessive rates of inflation on the ability of any Member to abide by its domestic support commitments.

제 11 부

제 17 조
농업위원회

이 협정에 따라 농업위원회가 설치된다.

제 18 조
약속이행의 검토

1. 우루과이라운드 개혁계획에 따라 협상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은 농업위원회가 검토한다.

2. 동 검토과정은 결정될 사항 및 주기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고사항과, 검토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요청에 따라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된다.

3.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통고사항 이외에 감축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국내보조조치 또는 기존 조치의 수정내용은 신속히 통고된다. 동 통고사항에는 신규 또는 수정된 조치의 상세사항과 동 조치가 이 협정 제6조 혹은 부속서 2에 규정된 합의된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4. 회원국은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물가상승율이 회원국의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한다.

5. Members agree to consult annually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with respect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normal growth of world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tments on export subsidies under this Agreement.

6. The review process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embers to raise any matter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 as set out in this Agreement.

7. Any Member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ny measure which it considers ought to have been notified by another Member.

Article 19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Part XII

Article 20
Continuation of the Reform Process

Recognizing that the long-term objective of 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s in support and protection resulting in fundamental reform is an ongoing process, Members agree that negotiations for continuing the process will be initiated one year before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aking into account:

5. 회원국은 이 협정의 수출보조금 약속의 틀 안에서 세계 농산물무역의 정상적인 증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6. 검토과정에서 회원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7.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자신이 간주하는 조치에 관하여 농업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 19 조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제 12 부

제 20 조
개혁과정의 계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계속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 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a) the experience to that date from implementing the reduction commitments;
(b)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commitments on world trade in agriculture;
(c) non-trade concern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the objective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 and the other objectives and concerns mentioned in the preamble to this Agreement; and
(d) what further commitments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long-term objectives.

Part XIII

Article 21
Final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GATT 1994 and of oth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shall appl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re hereby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가. 그날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나. 감축약속이 세계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및 이 협정 전문에 언급된 그 밖의 목적 및 관심사항

라. 위에 언급된 장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

제 13 부

제 21 조
최종조항

1. 1994년도 GATT의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ANNEX 1

PRODUCT COVERAGE

1. This Agreement shall cover the following products:

(i) HS Chapters 1 to 24 less fish and fish products, plus*

(ii)	HS Code	2905.43	(mannitol)
	HS Code	2905.44	(sorbitol)
	HS Heading	33.01	(essential oils)
	HS Headings	35.01 to 35.05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HS Code	3809.10	(finishing agents)
	HS Code	3823.60	(sorbitol n.e.p.)
	HS Headings	41.01 to 41.03	(hides and skins)
	HS Heading	43.01	(raw furskins)
	HS Headings	50.01 to 50.03	(raw silk and silk waste)
	HS Headings	51.01 to 51.03	(wool and animal hair)
	HS Headings	52.01 to 52.03	(raw cotton, waste and cotton carded or combed)
	HS Heading	53.01	(raw flax)
	HS Heading	53.02	(raw hemp)

2. The foregoing shall not limit the product coverage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The product descriptions in round brackets are not necessarily exhaustive.

부속서 1

대상 품목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어류 및 수산물을 제외하고 1류로부터 24류까지, 그리고*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코드2905.43(만니톨)
코드2905.44(소르비톨)
호33.01(정유)
호35.01-35.05(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글루우)
코드3809.10(전분질을 기제로한 것)
코드3823.60(소르비톨, 2905.44의 소르비톨을 제외한다.)
호41.01-41.03(원피와 가죽)
호43.01(생모피)
호50.01-50.03(생사와 견웨이스트)
호51.01-51.03(양모와 동물의 털)
호52.01-52.03(원면, 면웨이스트, 카드 또는 코움한 면)
호53.01(천연아마)
호53.02(천연대마)

2. 전 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대상품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둥근 괄호안의 품목명은 반드시 총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ANNEX 2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1. Domestic support measures for which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is claimed shall meet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y have no, or at most minimal, trade-distorting effects or effects on production. Accordingly, all measures for which exemption is claimed shall conform to the following basic criteria:

(a) the support in question shall be provided through a publicly-funded government programme (including government revenue foregone) not involving transfers from consumers; and,

(b) the support in ques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providing price support to producers;

plus policy-specific criteria and conditions as set out below.

Government Service Programmes

2. General services

Policies in this category involve expenditures (or revenue foregone) in relation to programmes which provide services or benefits to agriculture or the rural community. They shall not involve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or processors. Such programmes, which include but are not restricted to the following list, shall meet the general criteria in paragraph 1 above and policy-specific conditions where set out below:

(a) research, including general research, research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grammes, and research programmes relating to particular products;

(b) pest and disease control, including general and product-specific pest and disease control measures, such as early-warning systems, quarantine and eradication;

부속서 2

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1.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된 국내보조조치는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면제가 주장되는 모든 조치는 아래 기본적인 기준에 합치한다.

가.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정부의 징수감면 포함)에 의하여 제공되며, 그리고

나. 당해 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책특정적인 기준 및 조건에 합치한다.

정부서비스 계획

2. 일반서비스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은 농업 또는 농촌사회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과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을 수반한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아래 목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계획은 위의 제1항의 일반적인 기준과 아래에 규정된 정책특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가. 일반연구, 환경계획관련 연구 및 특정품목관련 연구계획을 포함하는 연구

나. 조기경보체제, 검역 및 박멸등 일반적 및 품목특정적 병해충 방제조치를 포함하는 병해충 방제

(c) training services, including both general and specialist training facilities;
(d) extension and advisor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means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research to producers and consumers;
(e) inspection services, including general inspection services and the inspection of particular products for health, safety, grading or standardization purposes;
(f) marketing and promotion services, including market information, advice and promotion relating to particular products but excluding expenditure for unspecified purposes that could be used by sellers to reduce their selling price or confer a direct economic benefit to purchasers; and
(g) infrastructural services, including: electricity reticulation, roads and other means of transport, market and port facilities, water supply facilities, dams and drainage schemes, and infrastructural work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grammes. In all cases the expenditure shall be directed to the provision or construction of capital works only, and shall exclude the subsidized provision of on-farm facilities other than for the reticulation of generally available public utilities. It shall not include subsidies to inputs or operating costs, or preferential user charges.

3.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5)]
Expenditures (or revenue foregone) in relation to the accumulation and holding of stocks of product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a food security programme identified in national legislation. This may include government aid to private storage of products as part of such a programme.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f this Annex, governmental stockholding programmes for food security purposes in developing countries whose operation is transparent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officially published objective criteria or guideline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including programmes under which stocks of foodstuffs for food security purposes are acquired and released at administered prices,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quisition price and the external reference price is accounted for in the AMS.

다. 일반 및 전문가 훈련시설 양자를 포함하는 훈련서비스

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 및 연구결과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는 지도 및 자문서비스

마. 일반적인 검사서비스 및 특정품목에 대한 위생, 안전, 등급화 또는 표준화 목적을 위한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서비스

바. 특정품목에 관한 시장정보, 조언 및 판매촉진을 포함하는 시장 확대 및 판매촉진서비스. 단,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부여를 위해 판매자가 사용 할 수 있는 불특정 목적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 전력공급망 설치, 도로 및 기타 운송수단, 시장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 시설, 댐 및 배수계획, 환경계획과 관련된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서비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출은 단지 고정설비의 제공이나 건설에 직결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익사업망을 위한 것이 아닌 농업 시설 공급을 위한 보조는 제외된다. 투입재보조, 운영비용 보조 또는 특혜적인 사용자 요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5)]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고 비축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민간의 농산물 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5) 이 부속서 제3항의 목적상, 그 운영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객관적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정부 비축계획은, 식량안보 목적의 식량의 재고물량을 관리가격으로 구매 방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이 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구매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는 보조총액측정치에 반영된다. 이 부속서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이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The volume and accumulation of such stocks shall correspond to predetermined targets related solely to food security. The process of stock accumulation and disposal shall be financially transparent. Food purchases by the government shall be made at current market prices and sales from food security stocks shall be made at no less than the current domestic market price for the product and quality in question.

4. Domestic food aid[6)]

Expenditures (or revenue foregone)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domestic food aid to sections of the population in need.

Eligibility to receive the food aid shall be subject to clearly-defined criteria related to nutritional objectives. Such aid shall be in the form of direct provision of food to those concerned or the provision of means to allow eligible recipients to buy food either at market or at subsidized prices. Food purchases by the government shall be made at current market prices and the financing and administration of the aid shall be transparent.

5.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Support provided through direct payments (or revenue foregone, including payments in kind) to producers for which exemption from reduction commitments is claimed shall meet the basic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above, plus specific criteria applying to individual types of direct payment as set out in paragraphs 6 through 13 below. Where exemption from reduction is claimed for any existing or new type of direct payment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s 6 through 13, it shall conform to criteria (b) through (e) in paragraph 6, in addition to the general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5) & 6)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3 and 4 of this Annex, the provision of foodstuffs at subsidized prices with the objective of meeting food requirements of urban and rural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on a regular basis at reasonable price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이러한 재고의 물량 및 비축은 전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사전 결정된 목표량에 상응한다. 재고의 비축과 처분과정은 재정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정부에 의한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식량안보용 재고의 판매는 당해품목 및 품질에 대한 현행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 의한다.

4. 국내식량원조[6)]

빈곤한 국민계층에 대한 국내식량구호의 제공에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식량원조의 수혜자격은 영양학적 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원조는 관련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식량 공급 형식 또는 수혜대상자가 식량을 시장가격 또는 보조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이 된다. 정부의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동 구호에 대한 자금조달 및 관리는 투명하여야 한다.

5.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또는, 현물지급을 포함하여, 징수감면)을 통해 제공된 보조로서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보조는 위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기준과 아울러 아래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아래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기존 또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에 대하여 감축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경우, 이 감축면제는 제1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추가하여 제6항의 나호로부터 마호까지의 기준에 합치한다.

5)와 6) 이 부속서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이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Decoupled income support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clearly-defined criteria such as income, status as a producer or landowner, factor use or production level in a defined and fixed base period.

(b)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type or volume of production (including livestock units) undertaken by the producer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c)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any production undertaken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d)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factors of production employed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e) No production shall be required in order to receive such payments.

7. Government financial participation in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n income loss, taking into account only income derived from agriculture, which exceeds 30 per cent of average gross income or the equivalent in net income terms (excluding any payments from the same or similar schemes) in the preceding three-year period or a three-year average based on the preceding five-year period, excluding the highest and the lowest entry. Any producer meeting this condition shall be eligible to receive the payments.

(b) The amount of such payments shall compensate for less than 70 per cent of the producer's income loss in the year the producer becomes eligible to receive this assistance.

(c) The amount of any such payments shall relate solely to income; it shall not relate to the type or volume of production (including livestock units) undertaken by the producer; or to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such production; or to the factors of production employed.

(d) Where a producer receives in the same year payments under this paragraph and under paragraph 8 (relief from natural disasters), the total of such payments shall be less than 100 per cent of the producer's total loss.

6. 비연계소득보조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나.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의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이러한 지불을 받기 위하여 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당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으로부터의 지불은 제외)의 30%를 초과하는 소득의 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생산자는 동 지불의 수혜자격을 갖는다.

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생산자가 동 지원에 대한 수혜자격을 갖게 되는 연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미만을 보상한다.

다.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오직 소득에만 관련되며, 생산자의 생산 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이러한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 또는 사용된 생산요소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생산자가 같은 연도에 이 항과 제8항(자연재해구호)에 따라 지불을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 총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8. Payments (made either directly or by way of government financial participation in crop insurance schemes) for relief from natural disaster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arise only following a formal recogni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that a natural or like disaster (including disease outbreaks, pest infestations, nuclear accidents, and war o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concerned) has occurred or is occurring; and shall be determined by a production loss which exceeds 30 per cent of the average of production in the preceding three-year period or a three-year average based on the preceding five-year period, excluding the highest and the lowest entry.
   (b) Payments made following a disaster shall be applied only in respect of losses of income, livestock (including payments in connection with the veterinary treatment of animals), land or other production factors due to the natural disaster in question.
   (c) Payments shall compensate for not more than the total cost of replacing such losses and shall not require or specify the type or quantity of future production.
   (d) Payments made during a disaster shall not exceed the level required to prevent or alleviate further loss as defined in criterion (b) above.
   (e) Where a producer receives in the same year payments under this paragraph and under paragraph 7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the total of such payments shall be less than 100percent of the producer's total loss.

9.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clearly defined criteria in programmes designed to facilitate the retirement of persons engaged in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or their movement to non-agricultural activities.
   (b) Payments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 total and permanent retirement of the recipients from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10.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clearly defined criteria in programmes designed to remove land or other resources, including livestock, from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8.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불(직접적인 또는 농작물 보험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통한 지불)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정부당국이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병의 발발, 병해충, 핵사고, 관련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전쟁)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중 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 중 최고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생산의 30%를 초과하는 생산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재해에 따른 지불은 당해 자연재해에 기인한 소득, 가축(동물의 수의적 치료와 관련된 지불포함), 토지 또는 그 밖의 생산요소의 손실과 관련되어서만 적용된다.

다. 지불은 이러한 손실의 복구에 필요한 총비용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또한 미래의 생산형태 또는 물량을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라. 재해기간동안 이루어진 지불은 위의 나호의 기준에 정의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생산자가 이 항과 제7항(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의한 지불을 같은 연도에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의 총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9.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은퇴 또는 동인이 비농업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지불은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자원 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그 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b) Payments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 retirement of land from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in the case of livestock on its slaughter or definitive permanent disposal.

(c) Payments shall not require or specify any alternative use for such land or other resources which involves the production of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s.

(d) Payments shall not be related to either the type or quantity of production or to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production undertaken using the land or other resources remaining in production.

11.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investment aid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clearly-defined criteria in government programmes designed to assist the financial or physical restructuring of a producer's operations in response to objectively demonstrated structural disadvantages. Eligibility for such programmes may also be based on a clearly-defined government programme for the re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land.

(b)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type or volume of production (including livestock units) undertaken by the producer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other than as provided for under criterion (e) below.

(c)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any production undertaken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d) The payments shall be given only for the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ment in respect of which they are provided.

(e) The payments shall not mandate or in any way designate the agricultural products to be produced by the recipients except to require them not to produce a particular product.

(f) The payments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structural disadvantage.

나. 지불은 농지를 최소한 3년 동안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 처분을 조건으로 한다.

다. 지불은 상업적 농산물의 생산을 수반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자원의 다른 대체 용도를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불은 생산형태 생산량에 관련되거나 또는 생산에 잔류하는 농지 또는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 가격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11.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활동의 재정적 또는 물리적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수혜자격은 농지의 재사유화를 위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계획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나. 특정년도의 지불금액은 아래 마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에 관계되거나 이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관련되거나 이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라. 지불은 그 대상이 되는 투자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동안 한하여 지급된다.

마. 지불은 특정품목의 생산금지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수혜자에게 특정품목의 생산을 의무화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산될 농산물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바. 지불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한정된다.

12. 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as part of a clearly-defined government environmental or conservation programme and be dependent on the fulfilment of specific conditions under the government programme, including conditions related to production methods or inputs.

(b) The amount of payment shall be limited to the extra costs or loss of income involved in complying with the government programme.

13. Payments under regional assistance programmes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limited to producers in disadvantaged regions. Each such region must be a clearly designated contiguous geographical area with a definabl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identity, considered as disadvantaged on the basis of neutral and objective criteria clearly spelt out in law or regulation and indicating that the region's difficulties arise out of more than temporary circumstances.

(b)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type or volume of production (including livestock units) undertaken by the producer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other than to reduce that production.

(c)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any production undertaken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d) Payments shall be available only to producers in eligible regions, but generally available to all producers within such regions.

(e) Where related to production factors, payments shall be made at a degressive rate above a threshold level of the factor concerned.

(f) The payments shall be limited to the extra costs or loss of income involved in undertak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prescribed area.

12.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되며, 또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 특정조건의 이행에 의존한다.

나.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13.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낙후된 지역의 생산자에게 한정된다. 이러한 각 지역은 법 또는 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고 당해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며, 명시 가능한 경제적 및 행정적 실체를 갖춘 명백히 지정된 지리적 인접구역이어야 한다.

나.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생산 감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 또는 생산량(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지불은 수혜대상지역의 생산자에게만 제공되나, 이러한 지역 내의 모든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마. 생산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지불은 관련요소의 한계수준이상에서는 체감비율로 이루어진다.

바. 지불은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ANNEX 3

DOMESTIC SUPPORT: CALCULATION OF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an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shall be calculated on a product-specific basis for each basic agricultural product receiving market price support, non-exempt direct payments, or any other subsidy not exempted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other non-exempt policies"). Support which is non-product specific shall be totalled into one non-product-specific AMS in total monetary terms.

2. Subsidi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both budgetary outlays and revenue foregone by governments or their agents.

3. Support at both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shall be included.

4. Specific agricultural levies or fees paid by producers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S.

5. The AMS calculated as outlined below for the base period shall constitute the bas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duction commitment on domestic support.

6. For each basic agricultural product, a specific AMS shall be established, expressed in total monetary value terms.

7. The AMS shall be calculated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point of first sale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Measures directed at agricultural processors shall be included to the extent that such measures benefit the producers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s.

부속서 3

국내보조 :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총액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보조금(다른 비면제 정책)을 받고 있는 각각의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 특정적으로 산출된다. 품목 불특정적 보조는 총화폐 단위로 단일의 품목 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로 합산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재정지출 및 징수감면액을 모두 포함한다.

3. 중앙 및 지방수준의 보조가 모두 포함된다.

4.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 농업부과금이나 수수료는 보조총액측정치에서 공제된다.

5. 기준기간동안 아래에 설명된 바에 따라 계산된 보조총액측정치는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의 기준 수준을 구성한다.

6. 각 기초농산물에 대해 총화폐가치 단위로 표시된 구체적인 보조총액측정치가 설정된다.

7. 보조총액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계산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된다.

8. Market price support: market price support shall be calculated using the gap between a 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and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 multiplied by the quantity of production eligible to receive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 Budgetary payments made to maintain this gap, such as buying-in or storage cost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AMS.

9. The 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shall be based on the years 1986 to 1988 and shall generally be the average f.o.b. unit value for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in a net exporting country and the average c.i.f. unit value for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in a net importing country in the base period. The fixed reference price may be adjusted for quality differences as necessary.

10. Non-exempt direct payments: non-exempt direct payments which are dependent on a price gap shall be calculated either using the gap between the fixed reference price and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 multiplied by the quantity of production eligible to receive the administered price, or using budgetary outlays.

11. The fixed reference price shall be based on the years 1986 to 1988 and shall generally be the actual price used for determining payment rates.

12. Non-exempt direct payments which are based on factors other than price shall be measured using budgetary outlays.

13. Other non-exempt measures, including input subsidies and other measures such as marketing-cost reduction measures: the value of such measures shall be measured using government budgetary outlays or, where the use of budgetary outlays does not reflect the full extent of the subsidy concerned,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subsidy shall be the gap between the price of the subsidized good or service and a representative market price for a similar good or service multiplied by the quantity of the good or service.

8. 시장가격지지 : 시장가격지지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적용관리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동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매 또는 저장비용 등의 재정지출은 보조총액 측정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고정외부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이 되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 된다. 고정참조가격은 필요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10. 비면제 직접지불 : 가격 차이에 기초하는 비면제 직접지불은 고정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관리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되거나 또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11. 고정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지불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실제가격이 된다.

12. 가격이외의 요소에 기초한 비면제 직접지불은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13. 투입재 보조금 및 판매비용 절감조치와 같은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하는 그 밖의 비면제조치 : 이러한 조치의 금액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되거나 재정지출의 사용이 관련 보조금을 완전히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계산의 기초는 보조를 받은 품목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유사품목 또는 서비스의 대표적 시장가격과의 차에 동 품목 또는 서비스의 양을 곱한 것이 된다.

ANNEX 4

DOMESTIC SUPPORT: CALCULATION OF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shall be calculated in respect of all basic agricultural products where market price support as defined in Annex 3 exists but for which calculation of this component of the AMS is not practicable. For such products the base level for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shall consist of a market price support component expressed in terms of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under paragraph 2 below, as well as any non-exempt direct payments and other non-exempt support, which shall be evaluated a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3 below. Support at both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shall be included.

2. The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on a product-specific basis for all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point of first sale receiving market price support and for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price support component of the AMS is not practicable. For those basic agricultural products, equivalent measurements of market price support shall be made using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 and the quantity of production eligible to receive that price or, where this is not practicable, on budgetary outlays used to maintain the producer price.

3. Where basic agricultural products falling under paragraph 1 are the subject of non-exempt direct payments or any other product-specific subsidy not exempted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the basis for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concerning these measures shall be calculations as for the corresponding AMS components (specified in paragraphs 10 through 13 of Annex 3).

4.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shall be calculated on the amount of subsidy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point of first sale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Measures directed at agricultural processors shall be included to the extent that such measures benefit the producers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s. Specific agricultural levies or fees paid by producers shall reduce the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by a corresponding amount.

부속서 4

국내보조 :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는 부속서 3에 정의된 시장가격지지가 존재하나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모든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을 위한 기준수준은 아래 제2항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로 표시되는 시장가격지지 요소와 아래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는 비면제 직접지불과 다른 비면제보조로 구성된다. 중앙 및 지방수준의 보조도 모두 포함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보조상당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초의 판매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특정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조총액치중 시장가격지지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품목에 한한다. 이러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의 보조상당측정치는 적용관리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항에 해당되는 기초농산물이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 다른 품목 특정적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보조상당 측정치의 기초는 상응하는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이 된다.(부속서 3의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됨)

4. 보조상당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정책은 동 정책이 기초농산물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포함된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농업부과금 또는 수수료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조상당측정치를 감소시킨다.

ANNEX 5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4

Section A

1.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shall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o any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and its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designated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treatment"):
   (a) imports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mprised less than 3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1986-1988 ("the base period");
   (b) no expor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base period for the designated products;
   (c) effective production-restricting measures are applied to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d) such products are designated with the symbol "ST-Annex 5" in Section I-B of Part I of a Member's Schedule annexed to the Marrakesh Protocol, as being subject to special treatment reflecting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rrespond, as specified in Section I-B of Part I of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to 4per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designated products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are increased by 0.8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2. At the beginning of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Member may cease to apply special treatment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by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In such a case, the Member concerned shall maintain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already in effect at such time and increase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by 0.4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final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부속서 5

제4조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 1 절

1.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또는 관련 조제품("지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특별대우"라 한다)

   가. 지정 품목의 수입이 1986-1988년 기준기간("기준기간")중의 해당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것

   나. 기준기간 개시 이후 지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동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될 것

   라. 이러한 품목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반영하는 특별대우의 대상으로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ST-Annex 5"로 지정될 것, 그리고

   마.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지정품목과 관련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의 제1차년도의 초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며, 그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8%씩 증가될 것

2. 이행기간 중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접근 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4%씩 증가시킨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최소접근 기회의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3.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1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tself as a part of the negotiations set out in Article 20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4.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5. Where the special treatment is not to be continued at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ember concerned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In such a case,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for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t the level of 8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6.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maintained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com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with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Such products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and appli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special treatment ceases and thereafter, at such rates as would have been applicable had a reduction of at least 15percent been implemented over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hese duties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ariff equivalents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Section B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shall also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o a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that is the predominant staple in the traditional die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a) through 1(d), as they apply to the products concerned, are complied with: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제1항에 규정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정 제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그 자체의 시간범위 내에서 종결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되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5. 이행기간 종료 시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 후 지정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8% 수준에서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6. 지정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는 일반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는 특별대우의 적용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유효하게 제4조제2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동 품목은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그리고 그 이후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되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관세의 세율은 이행기간동안 매년 균등하게 최소 15% 감축이 시행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준이 된다. 동 관세는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 2 절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as specified in Section I-B of Part I of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correspond to 1per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s concer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are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o 2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at the beginning of the fift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correspond to 2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and are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o 4per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until the beginning of the 10th year.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10th year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b) appropriat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have been provided for in other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8.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7 after the end of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10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9.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10. In the event that special treatment under paragraph 7 is not to be continued beyond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tariff equivalent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In other respect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shall apply as modified by the releva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ed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under this Agreement.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제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Attachment to Annex 5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of Tariff Equivalents for the Specific Purpose Specified in Paragraphs 6 and 10 of this Annex

1. The calculation of the tariff equivalents, whether expressed as ad valorem or specific rates, shall be made using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rices in a transparent manner. Data used shall be for the years 1986 to 1988. Tariff equivalents:
   (a) shall primarily be established at the four-digit level of the HS;
   (b) shall be established at the six-digit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S wherever appropriate;
   (c) shall generally be established for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by multiplying the specific tariff equivalent(s) for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proportion(s) in value terms or in physical terms as appropriate of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and take account, where necessary, of any additional elements currently providing protection to industry.

2. External prices shall be, in general, actual average c.i.f. unit values for the importing country. Where average c.i.f. unit values are not available or appropriate, external prices shall be either:
   (a) appropriate average c.i.f. unit values of a near country; or
   (b) estimated from average f.o.b. unit values of (an) appropriate major exporter(s) adjusted by adding an estimate of insurance, freight and other relevant costs to the importing country.

3. The external prices shall generally be converted to domestic currencies using the annual average market exchange rate for the same period as the price data.

부속서 5에 대한 첨부물

이 부속서 제6항과 제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 지침

1.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투명한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986년부터 198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용된다. 관세상당치는

   가. 일차적으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4단위 수준에서 설정된다.

   나.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6단위 혹은 보다 세분된 수준에서 설정된다.

   다. 가공품 및/또는 조제품의 경우 동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차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상당치에 적절히 가치기준 또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시 산업에 대해 현재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2.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우 실제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단가가 된다.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단가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외부가격은

   가.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단가가 되거나, 또는

   나. 주요 수출국의 평균 본선인도 단가에 보험, 운임 및 수입국에 대한 다른 관련비용 추정치를 가산 하여 조정, 산정한다.

3.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가격 관련 자료와 동일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시장 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4. The internal price shall generally be a representative wholesale price ruling in the domestic market or an estimate of that price where adequate data is not available.

5.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s may be adjusted, where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differences in quality or variety using an appropriate coefficient.

6. Where a tariff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se guidelines is negative or lower than the current bound rate,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 may be established at the current bound rate or on the basis of national offers for that product.

7. Where an adjustment is made to the level of a tariff equivalent which would have resulted from the above guidelines, the Member concerned shall afford, on request, full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with a view to negotiating appropriate solutions.

4. 국내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동 가격의 추산치가 된다.

5. 최초 관세상당치는 필요한 경우, 품질 혹은 품종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이러한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가 음수이거나 혹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초 관세상당치는 현행 양허관세율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국별 제안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다.

7. 위의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 수준을 조정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참고 2 >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논의 동향

<보조금의 체계>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 DM)	④블루박스 (Blue Box : BB)	

①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② 생산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축 의무가 있는 보조
③ AMS와 같은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④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보조(직불)
⑤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AMS+Deminimis+Blue box

□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의 개별보조금 뿐만 아니라 그 합계인 무역왜곡보조총액도 감축 의무

○ 개별보조금 지급의 합계가 무역왜곡보조총액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최소허용보조를 추가 감축

○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 우리나라는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선진국 기준 적용시 55%, 개도국 기준 적용시 36.7% 감축 의무

선진국				개도국
구 간	OTDS규모 (억달러)	OTDS 감축율	이행기간	
1구간(EU)	600 초과	80%	첫날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36.7% (선진국의 2/3) - 첫날 20% 감축 ,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2구간(미국, 일본)	600~100	70%		
3구간(기타 국가)	100억 미만	55%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나 감축대상보조(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UR협정 이행 최종연도의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하며, AMS 수준이 높을수록 큰 감축률 적용

○ AM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 우리나라는 AMS를 **선진국** 기준 적용시 **45% 감축**되며, **개도국** 기준시 적용시 **30% 감축** 의무

구간	AMS규모 (억달러)	AM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첫날 총 AM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30%(선진국의 2/3) - 첫날 총 AMS의 3.3% 감축,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
2구간(미국, 일본)	400~150	60%		
3구간(기타 국가)	150억 미만	45%	첫날 총 AMS의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며, **이행 첫날**부터 **적용**

○ **선진국**은 '95-'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기준기간 동안 AMS 지원 품목뿐만 아니라 기준기간 이후 AMS 지급품목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가능

○ **개도국**은 아래의 옵션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품목특정 AMS 상한을 설정

①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②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생산액의 20%

③ 해당연도 총 AMS의 20%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을 50% 이상 감축하되, 감축한 한도를 **이행 첫날**부터 적용

*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

□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을 33.3% 이상 감축하되,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 부여

*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10%

라 블루박스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비생산시에도 지급)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

□ **선진국**은 '95~'00년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95-'00년 또는 '95-'04년 농업총생산액의 5%를 **총 블루박스 한도**로 설정

□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설정

□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 전환시** 품목별 블루박스 지급한도는 초과 가능 (전체 BB한도는 유지)하며,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되며** 전환된 블루박스는 AMS로 회귀 불가

○ 다만,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블루박스로 전환시 블루박스 **전체 상한 초과 가능**

마 허용보조(Green Box)*

* 허용보조(농업협정, 부속서2)는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보조로써,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현행 농업협정에 비해 **직접지불 관련 요건을 강화**

○ 비연계소득보조,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보조,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직불에서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으로 **기준기간 갱신을** 인정

– 수혜자격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된 **고정불변기간** 내의 여러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

– **기준기간 갱신은** ① 변경기간은 상당히 긴 과거 연도 ② 수확량이나 재배면적당 지급단가 증가와 연계되어서는 안 됨 ③ 국내보조 및 가격보조 관련 의무 회피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 및 공공비축제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일부 확대**

○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에서 **개도국**의 경우 손실이 과거 3개년 평균 생산액(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축성 확대

○ 공공비축제는 품목의 구입가격과 외부 참조가격의 차이를 AMS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 자원빈곤층을 위한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서 제외**

동 WTO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다자협상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00-1892